

---

ESG 경영 · 투자 확산에 연계한  
「**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**」

---

2021. 12. 8.

금융위원회

# 목 차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사회적금융 추진 현황 및 평가 .....	2
III. ESG연계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.....	4
1. 사회적 가치 증진분야로 자금흐름 재조정 .....	5
2.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.....	8
3. 사회적경제기업 등 역량강화 .....	10
※ 참고	
1.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요 .....	12
2. 사회적금융 한눈에 개요 .....	13

# I. 추진배경

- 코로나 19 이후 양극화 우려,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따라 ESG 논의가 활발
  - 정부는 한국판 뉴딜(‘20.7월),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(‘20.12월) 등을 통해 저탄소(E)·포용(S)·공정(G)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
  - 특히 금융분야는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ESG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, 포용(S) 경제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 필요
-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·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적금융은 포용(S)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

## 【사회적금융 개념】

- (협의)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\*에 투자·융자·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
  - \* 사회적경제기업(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등) 및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활동(공공성이 큰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활동)
- (광의) 보조금(Grant)과 자선행위(Philanthropy)도 포함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책임투자(SRI)까지 포괄



## Ⅱ. 그간의 추진 내용 및 평가

① (자금공급)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

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등 약 1.8조원을 공급

[공급실적(억원) : ('18) 1,937 → ('19) 4,625 → ('20) 5,700 → ('21.10) 5,586]

② (인프라조성)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집중·활용, 사회적성과 심사·평가 및 전달체계 구축

① (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) 민간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금융지원현황 등 정보 공유 추진

➔ 1단계: 신용정보원내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('19.9.2.)

2단계: DB를 신용거래내역이 없는 기업으로 확대(신정법 시행령 개정 '20.8.5.)

② (중개기관 육성) 사회적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배정, 성과평가 방법 교육 등 지원

➔ 비수도권 지역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수행여부를 조사 하는 등 사회적금융기관 발굴 노력('21.3월)

③ (사회적금융 정보) 사회적금융 취급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를 구축하여 기관간 공동 활용

➔ ① 실태조사, 간담회 등을 통해 중개기관 DB를 구축하고 서금원 홈페이지에 공개

② '사회적금융 한눈에' 서비스로 개편('20.10월 오픈)

④ (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) 기관별로 사회적금융 심사·평가체계를 운영<sup>①</sup>하고 「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」 개발하여 민간기관 등에 제공<sup>②</sup>

➔ ①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사회적성과 창출역량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별도 심사기준 마련(서금원, 중진공, 성장금융, 신보, 기보 등 협의회 참여기관)

② 웹 기반 「표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」 구축('19.11월) → 민간 중개기관 등에 공개('20.4.1.) → 시스템 활용확산 추진('21.7월 현재 총 16회 설명회 실시 등)

### ③ (민간확대) 은행·국민의 사회적금융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

#### ① (클라우드펀딩) 사회적기업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

- ➔ ①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'18.4월), ② 클라우드넷 內 사회적기업 전용관 운영('18.1월), 「사회적기업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」 등을 통해서 13개사에 펀딩비용 등 6,300만원 지원(예탁결제원)
- ➔ 사회적기업이 41건(27개사)의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31.9억원을 조달 (기업별 평균성공금액은 1.18억원)

#### ② (은행) 사회적금융 모범규준 제정 등 은행권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

- ➔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은행의 자발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내외로하는 모범규준 제정('18.12.)
- ② 은행권의 사회적금융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·발표 (보도자료 배포)
- ➔ '20년말 사회적금융 실적은 1조 1,419억 원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시작된 '18년말(5,443억 원) 대비 2배 이상 성장

### ④ (협력체계)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「사회적금융 협의회」를 구성·운영

- ➔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장, 관계부처 담당과장, 담당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
- ② 기관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·실적 점검, 인프라 구축 협의(총 11회 개최)

#### ➔ 그간 추진 내용에 대한 평가

-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 3개년('18~'20) 동안 사회적금융 공급액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공공부문 위주로,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
- 임팩트 투·융자 활성화를 걸림돌인 임팩트워싱\*(impact washing) 방지를 위한 사회적가치창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관한 협의 필요
- \* 사회와 환경에 관심이 없으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, 임팩트 투자시 위협요인으로 임팩트워싱이 가장 많이 거론됨(GIIN '20 설문조사)
- 사회적금융 인프라(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등)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 개선 추진 필요

### Ⅲ. ESG연계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

#### <기본방향>

##### 목표

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

##### 전략

사회적금융 접근성 제고

#### 추진 과제

##### ① 사회적 가치 증진분야로 자금흐름 재조정

- ① 민간재원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
- ②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지속

##### ②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

- ①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구축
- ② 사회적경제기업 DB 확충
- ③ 사회적금융 상품 정보 제공

##### ③ 사회적경제기업 등 역량강화

- ①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역량 강화 등
- ②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

# 1

## 사회적 가치 증진 분야로 자금 흐름 재조정 [案]

- ◆ 사회적채권 발행 가이드라인에 사회적금융공급을 반영하는 등 민간재원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
- ◆ 민간 사회적금융시장이 충분히 조성 될 때까지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지속

### 1-1 민간재원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

- 1] (사회적금융 지표) ESG 관련 기업·금융기관 등이 활용하도록 사회적채권<sup>①</sup> 가이드라인에 사회적금융<sup>②</sup>을 대상사업 예시로 포함 기재부

- ① ESG채권 중 하나로 **사회가치 창출 사업**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 
[21.9월 현재 상장잔액은 약 120조(주금공 95조, 장학재단 9조, 중진공 4.6조)]
- ②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, 임팩트펀드 출자 등

- 사회적 가치와 연계 가능한 '사회적 가치 지표 풀' 구축 기재부

#### \* '사회적 가치 지표 풀' 예시

① 목표		② 실행 원칙		③ 지표	
사회적 가치	SDGs	주제	출처	세부 내용	출처
7.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	8.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	노동 관행	ISO 26000 6.4.	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 수 및 비율	GRI 401-1
				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	GRI 401-3

② (모집부담완화) 성장금융이 사회투자 자(子)펀드에 매칭출자 할 민간투자자를 지정해줌으로써 자펀드의 모집부담 완화 [금융위]

- (현행) 사회투자 자펀드 운용사(GP)는 성장금융(앵커출자자)의 일정비율(예: 33.3%)의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함
- (개선) 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자를 직접 모집하여 자펀드 결성시 매칭출자할 수 있도록 함



③ (투자 인센티브 강화)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선택폭 확대 [금융위]

- (현행) 민간투자 인센티브로 후순위 보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, 민간출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\*
- \* 성장금융 사회적투자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등은 펀드 손실 시에만 효과 있는 「후순위 보강제도」보다는 수익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선호

※ 기존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(후순위 보강)

- 민간출자자 출자금액에 한하여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20%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(펀드별 5억원 한도)

- (개선) 기존 ① 후순위 보강 外 ② 초과수익 이전 및 ③ 콜옵션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이익부여

※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강화(안): 택 1

- ① (기존) 후순위 보강: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일정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
- ② (신규) 초과수익 이전: 기준수익률 초과시, 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정부분을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
- ③ (신규) 콜옵션 부여: 투자 종료시점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성장사다리펀드 지분 매입권리 부여

③ (신협 출자허용) 신협의 사회적경제조직\*에 대한 출자 허용 추진 금융위

\* 사회적경제기업,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 등

- 신협의 설립 취지인 지역 협력 및 유대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상호 협력방안을 추진

\* 신협법 개정안 발의('20.7.15.),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('21.4.26.)

※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내용

- (상호협력) 신용협동조합이 공동유대와 관련있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- (타 법인 출자) 신용협동조합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거쳐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른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도록 허용
  - \* 동일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% 한도에서 출자 가능
- (기금 설치)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시

## 1-2 공공부분의 사회적금융 공급 지속

- (공급확대)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민간 사회적금융시장이 충분히 조성될 때까지 공공부분의 사회적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 협의회

\* 공급 추이 : ('18) 1,937 → ('19) 4,625 → ('20) 5,700 → ('21.10월) 5,586억 원

-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하여 관계기관의 사회적금융 공급목표 설정 및 집행현황 점검
- 공공부문 자금공급 수혜기업의 사회적·경제적 성과 분석 추진
  - \* 분석대상, 분석방법, 수행기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

※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실적 (단위 : 억원)

유형	기관	'18년	'19년	'20년	'21.10월
대출	서민금융진흥원	28	63	78	64
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386	639	911	999
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42	85	84	104
	신협		237	453	344
	새마을금고		30	115	155
	<b>(소계)</b>	<b>456</b>	<b>1054</b>	<b>1641</b>	<b>1,666</b>
보증	신용보증기금	1,077	1,609	1,655	1,589
	지역신용보증재단	145	165	184	152
	기술보증기금		841	1,239	1,369
	<b>(소계)</b>	<b>1,222</b>	<b>2,615</b>	<b>3,078</b>	<b>3,110</b>
투자	한국성장금융	196	311	257	332
	한국벤처투자	63	645	724	478
	<b>(소계)</b>	<b>259</b>	<b>956</b>	<b>981</b>	<b>810</b>
<b>계</b>		<b>1,937</b>	<b>4,625</b>	<b>5,700</b>	<b>5,586</b>

## 2

##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

- ◆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금융 인프라 개선 추진
- ◆ 사회적가치(성과) 경영과 투자를 위한 평가지표 논의

### 2-1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

1] (사회적경제기업\* 평가)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 시스템을 사용자(공익법인 등 사회적금융기관)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위

\* 4대 사회적경제기업: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

-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(창업초기, 소규모 등)과 금융·중개기관별 특성(소진공, 신탁 등)을 고려한 간이평가 모형 개발 추진
- ②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출액, 고용현황 등 정량적 자료를 평가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하는 성과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
  - 사회적금융(중개)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기업의 사회적·경제적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
- ③ 중개기관 운영협의체를 구성('22년 上), 중개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, 평가 신뢰성 확보노력 지속

2] (사회적 성과 평가) 사회적금융(투·융자) 성과평가를 위한 사회적 성과(임팩트) 평가기준(정의와 측정 등) 정립을 추진 고용부·중기부·금융위

○ 글로벌 기준<sup>①</sup>에 부합하는 「사회적 성과(가치) 측정 및 보고서 체계」 개발 등을 추진중인 관계기관<sup>②</sup>간 협력·정보공유

① 예) IMP (Impact Management Project 서로 다른 표준간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의 측정·경영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)

② 고용부(사회적기업진흥원)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회적가치지표(SVI: Social Value Index) 개발(2017)

중기부(기술보증기금)는 IMP를 기반으로 '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임팩트 가치 측정체계' 개발을 추진 중('20~'22)

## 2-2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금융상품 정보

① (사회적경제기업 DB) 은행 등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의 DB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DB 확충·개선 [협의회](#)

① (DB확충) 현재는 신용정보원에 4대 사회적경제기업 (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) 정보를 집중·활용 중이나

-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 강화 기조\*에 맞춰 소셜벤처 정보도 집중·활용 추진 (필요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)

\* 벤처기업육성법 개정(21.7.21)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, 사회적경제기본법안(김영배 의원안)에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추가하는 등 소셜벤처를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정하는 추세

② (개선)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의 오등록 및 휴폐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DB의 정확성·최신성 확보 노력

\* 국세청 오픈 API(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서비스)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

② (사회적금융상품 정보)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사회적금융 한눈에」\*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[금융위](#)

\*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금융 상품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「사회적금융 한눈에」 서비스오픈(20.10월)

○ (현행) 제공되는 정보가 금융회사, 사회적금융중개기관, 서금원 사업수행기관 등의 대출 상품\* 위주로 한정

\* 66개 기관(지자체, 공공기관, 은행 및 기타 민간) 총137개 상품 등록(21.10월말)

○ (개선) 투자상품(사회적펀드) 및 기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도 발굴·등록하고, 분기별로 현행화 추진하고

- 사회적경제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“사회적금융 한눈에” 홍보

### 3

## 사회적경제기업 등 역량강화

- ◆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세무·회계 교육, 컨설팅 지원 등 추진
- ◆ 상대적으로 열악한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

### 3-1 경영역량 강화 등

#### ① (사회적경제기업)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경영역량 강화 지원 【협의회】

##### ① 세무·회계프로그램(CU-bizcoop)\* 무상 보급 및 교육과정\*\* 운영(신협)

- \* 신협에서 운영 중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세무·회계 프로그램
- \* 전표 처리, 재무제표 작성, 세무신고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지원

##### ②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및 사회적금융-경영컨설팅 연계프로그램 운영

- 경영전략, 마케팅, 인사, 생산관리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컨설팅 지원 (신보, 연간 4백만원 한도)
-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\* 운용 (사회적기업진흥원)

- \* ① 금융 상담·컨설팅 및 금융상품 연계 전담 은퇴전문가(SE프로) 선발·운영
- ② 민간·공공기관간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기획 추진
- ③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대상으로 IR코칭 프로그램 운영

#### ② (중개기관)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강화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【협의회】

-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교육 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마련

- \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 교육(예 사회적기업의 이해, 사회적 가치 산정 기준 및 활용) 추진

### 3-2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

#### ① (투자) 사회투자펀드가 출자한 하위펀드에 대해 비수도권 기업 투자 인센티브 부여

- (안) 펀드의 30% 이상을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 인센티브\* 제공 추진 금융위

\* (예) 초과수익 이전(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부를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), 비수도권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인정비율 상향

- 사회투자펀드 운용사와 함께 거점 지역 중심 설명회 개최 추진

#### ② (상호금융) 지역에 기반하여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의회

- 사회적경제에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확대(현 71개→100개)

- 사회적경제기업이 '21년 새로 출시한 전용상품<sup>①</sup>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대조건도 개선<sup>②</sup> 추진

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, 한도상향, 우대금리 제공 등 전용상품 신규출시(새마을 금고·농·수협, 산림조합), 사회적경제기업 마이너스 통장 출시(신협)

②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도입, 담보인정비율 상향 등

#### ③ (중개기관) 비수도권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 지속 금융위

- 비수도권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, 서금원의 사회적 금융 민간사업 수행기관의 수도권 편중 완화노력\*을 지속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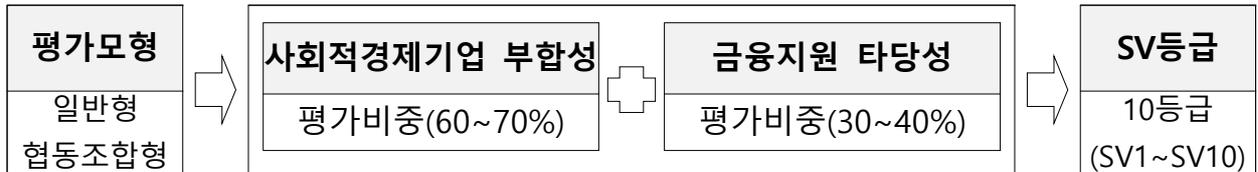
\* 비수도권 사업수행기관 신청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·단체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 등  
(비수도권 중개기관 비중 : ('18) 0%, ('19) 10%, ('20) 18%, ('21) 27%)

## 참고1

##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요

- 「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」(18.2월)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'금융지원을 위한 표준 평가시스템' 구축
  - 공공기관,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 확대를 위해 웹 플랫폼 형태로 '20.4월 오픈

### 【평가시스템 체계】



- '21.10말 현재 38개 기관(지자체 및 사회적금융 중개기관)이 정책자금 수혜기업 평가 또는 평가지표 활용을 위해 평가시스템 플랫폼 이용 중
- 시스템은 조직거버넌스 구조를 고려하여 협동조합형, 일반기업형으로 나뉘어 있으며, 평가결과는 SV1~SV10으로 산출
-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(사회적경제 운영원리가 잘 지켜지는지를 평가), 금융지원 타당성(신용위험을 측정)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

### 【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 현황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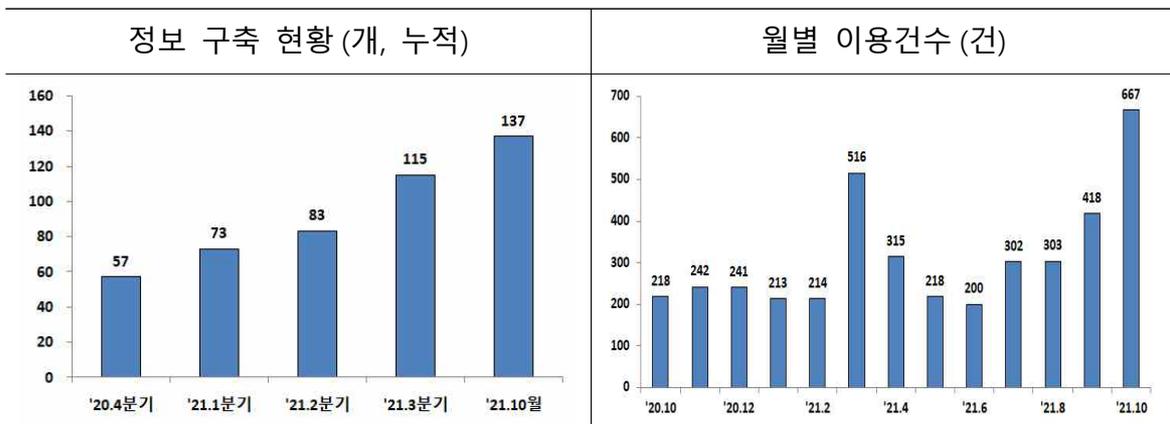
	부문	평가영역	지표수		부문	영역	지표수
일반기업형	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부합성 (70%)	기업철학	3	협동조합형	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부합성 (60%)	조합철학	3
		참여/배려 및 연대	3			참여/배려 및 연대	3
		사회적 가치 지향	1			조합원 편익	1
		사회환원	1			공동체/상생	2
	금융지원 타당성 (30%)	경영역량	1		금융지원 타당성 (40%)	경영역량	1
		교육	2			교육	2
		지속가능성	2			지속가능성	3
		재무관리역량	5			재무관리역량	5
	<b>합 계</b>		<b>18</b>		<b>합 계</b>		<b>20</b>

## 참고2

## 사회적금융 한눈에 개요

- **(개요)** 서금원 홈페이지 內 사회적금융 수요자를 위한 사회적금융 상품정보 플랫폼 “사회적금융 한눈에” 서비스를 오픈(’20.10월)
  - 금융기관,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제공하는 사회적금융 관련 금융상품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재하고,
  -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의 87%가 사회적 금융상품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반영
- **(현황)** ‘사회적금융 한눈에’를 통해 금융회사·중개기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총 137개 금융상품 및 지원제도 정보제공

\* ’20.10월~’21.10월 ‘사회적금융 한눈에’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4,067건(월평균 312.8건)



- **(추진계획)** 사회적금융 대출상품의 DB를 확장하는 동시에 투자 상품 등록 병행, 수요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선 추진
  - 사회적금융 협의회 가입기관을 중심으로 ’21년 말까지 대출 상품 정보 확장, 업데이트 추진
  - 한국성장금융,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자상품, 기타 지원제도 등 등록정보 확대 추진